

울산 드림 in 시티 에일린의 뜰 2차 입주자모집공고(안)

알려드립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ulsan-eileen.co.kr)/www.eileen-garden.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03. 12(목)**입니다.
- 견본주택 운영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12)의 익일 **2015.03.13(금) 매일 10:00부터**이며, 인쇄물은 견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24번길 1(달동))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및 85㎡ 초과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정세 및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05.31./2015.02.27.)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인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정세 자격을 부여함 (단, 수도권보급자리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정세를 자격 부여)
 - 인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함
 - 이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에 따라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특별공급을 실시합니다.
- 이 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가점제40%, 추첨제60%)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안내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2순위 청약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www.ap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 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료 명단이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첨제한기간 경과 후 당해 청약통장 사용가능).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매행위 및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별표2의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재당첨 제한) 일부 개정(2012.09.25)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의 3년간, 85㎡ 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인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다만,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인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청약지역 확대 및 저층 우선배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3.12)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I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호 **2015.03.11(수)**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B1블럭 ■ 대지면적 : 54,793.50㎡ (주거 부분 지분 51,934.8800㎡, 주거 외 부분 지분 2,858.62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동 총 1,1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총 1,187세대 (일반특별공급 104세대, 다자녀특별공급 115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4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33세대,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352세대 포함)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비율 (㎡)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계약 면적		특별공급				일반 분양	계	최저층 세대	
			전용 면적	주거 공용	공급 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지방 이전
민영주택	2015000234(01)	71.8830	71.8830	24.3169	96.1999	2.9239	30.6307	129.7544	36.8277	13	13	13	4	40	135	5	
	2015000234(02)	84.9044A	84.9044	27.6275	112.5319	3.4536	36.1793	152.1648	43.4989	39	39	39	11	119	398	12	
	2015000234(03)	84.9275B	84.9275	27.9761	112.9036	3.4545	36.1892	152.5472	43.5107	4	4	4	1	12	43	0	
	2015000234(04)	84.8412C	84.8412	28.7701	113.6113	3.4510	36.1524	153.2147	43.4665	18	18	18	5	54	70	6	
	2015000234(05)	84.9044D	84.9044	27.6275	112.5319	3.4536	36.1793	152.1648	43.4989	16	16	16	5	50	66	6	
	2015000234(06)	84.9275E	84.9275	27.9761	112.9036	3.4545	36.1892	152.5472	43.5107	14	14	14	4	42	53	6	
	2015000234(07)	104.8541	104.8541	33.1048	137.9589	4.2650	44.6803	186.9042	53.7197	-	11	-	3	35	69	5	
공급세대 합계										104	115	104	33	352	479	1,187	40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됨
- ※ 당첨 및 동호수 배정은 해당 주택형의 모든 동호수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통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소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됨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내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시 상이할 수 있음

II 공급가격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층별	동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계약시	2차 2015-05-08	1차 2015-08-10	2차 2016-02-10	3차 2016-07-10	4차 2017-02-10	5차 2017-05-10	6차 2017-08-10	입주시	
71.8830	1	202동 ~ 206동	1	71,158,400	169,241,600	240,400,000	10,000,000	1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24,040,000	72,120,000
71.8830	2		5	72,579,200	172,620,800	245,200,000	10,000,000	1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73,560,000
71.8830	3		5	74,740,000	177,760,000	252,500,000	10,000,000	1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25,250,000	75,750,000
71.8830	4		5	76,900,800	182,899,200	259,800,000	10,000,000	1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25,980,000	77,940,000
71.8830	5-32		119	78,351,200	186,348,800	264,700,000	10,000,000	16,470,000	26,470,000	26,470,000	26,470,000	26,470,000	26,470,000	26,470,000	26,470,000	79,410,000
84.9044A	1	201,202동/ 205동 ~ 211동	9	78,599,500	185,600,500	264,200,000	10,000,000	1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26,420,000	79,260,000
84.9044A	2		12	80,265,500	189,534,500	269,800,000	10,000,000	1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26,980,000	80,940,000
84.9044A	3		12	82,824,000	195,576,000	278,400,000	10,000,000	17,840,000	27,840,000	27,840,000	27,840,000	27,840,000	27,840,000	27,840,000	27,840,000	83,520,000
84.9044A	4		12	85,352,700	201,547,300	286,900,000	10,000,000	1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28,690,000	86,070,000
84.9044A	5-34		353	87,048,500	205,551,500	292,600,000	10,000,000	1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29,260,000	87,780,000
84.9275B	21-34	201동/ 207동-211동	43	87,585,300	207,314,700	294,900,000	10,000,000	1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29,490,000	88,470,000
84.8412C	1	201동/ 207동-211동	4	79,330,700	188,769,300	268,100,000	10,000,000	16,810,000	26,810,000	26,810,000	26,810,000	26,810,000	26,810,000	26,810,000	26,810,000	80,430,000
84.8412C	2		6	81,047,000	192,853,000	273,900,000	10,000,000	1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27,390,000	82,170,000
84.8412C	3		6	83,591,700	198,908,300	282,500,000	10,000,000	1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28,250,000	84,750,000
84.8412C	4		6	86,136,400	204,963,600	291,100,000	10,000,000	1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29,110,000	87,330,000
84.8412C	5-34		161	87,823,100	208,976,900	296,800,000	10,000,000	19,680,000	29,680,000	29,680,000	29,680,000	29,680,000	29,680,000	29,680,000	29,680,000	89,040,000
84.9044D	1	201동/ 204동-206동/ 208동-209동	3	80,622,500	190,377,500	271,000,000	10,000,000	1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27,100,000	81,300,000
84.9044D	2		6	82,318,200	194,381,800	276,700,000	10,000,000	1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27,670,000	83,010,000	
84.9044D	3		6	84,847,000	200,353,000	285,200,000	10,000,000	1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28,520,000	85,560,000	
84.9044D	4		6	87,375,700	206,324,300	293,700,000	10,000,000	1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29,370,000	88,110,000	
84.9044D	5-32		148	89,071,500	210,328,500	299,400,000	10,000,000	1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29,940,000	89,820,000
84.9275E	1	201동/ 207동-211동	5	81,942,300	193,957,700	275,900,000	10,000,000	17,590,000	27,590,000	27,590,000	27,590,000	27,590,000	27,590,000	27,590,000	27,590,000	82,770,000
84.9275E	2		6	83,635,200	197,964,800	281,600,000	10,000,000	1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28,160,000	84,480,000
84.9275E	3		6	86,159,700	203,940,300	290,100,000	10,000,000	1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29,010,000	87,030,000
84.9275E	4		6	88,713,900	209,986,100	298,700,000	10,000,000	1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29,870,000	89,610,000
84.9275E	5-30		118	90,406,800	213,993,200	304,400,000	10,000,000	2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30,440,000	91,320,000
104.8541	2	202동 ~ 205동	5	96,376,600	249,023,400	345,400,000	10,000,000	2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34,540,000	103,620,000
104.8541	3		5	99,306,400	256,593,600	355,900,000	10,000,000	2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35,590,000	106,770,000	
104.8541	4		5	102,208,300	264,091,700	366,300,000	10,000,000	2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104.8541	5-32		103	104,161,500	269,138,500	373,300,000	10,000,000	2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37,330,000	111,99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에서 주택형별·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 층·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 결과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함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 단지 내 비주거시설(상업시설 등)은 상기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 소유가 아닌 별도로 분양되는 시설임
-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음)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III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대상자	거주구분	신청일시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발표 일시/장소	동호수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2015.03.18(수) 10:00-15:00	건본주택방문접수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24번길 1(달동)]	유형별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름	<당첨자 선정> ·일시 : 2015.03.18(수) 16:00 ·장소 :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동호수 발표> ·일시 : 2015.03.26(목) ·장소 : 당사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특별공급 대상자	2015.03.17(화) 09:00-17:30 / 2015.03.18(수) 09:00-15:00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www.housing.or.kr] 및 [apt2.housing.or.kr]		·일시 : 2015.03.18(수) 17:00 ·장소 :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 또는 apt2.housing.or.kr)에서 확인	

- * 공통사항
- 가.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선정 및 공고 일시와 관련하여 특별공급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선정 및 공고시각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정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당첨자선정 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

-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양육 특별공급, 제19조의5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순으로 함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 나.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자속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내 무주택구성원 중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2015.02.27.) 개정 사항 안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p>“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p> <p>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p> <p>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p>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p>
-----------	---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시 무효처리되며, 특별공급 신청이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기계약 또는 계약 해제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취소·해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분양금 반환시 남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음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24) 현재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중 주택공급신청시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신청하시기 바람(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피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1.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소계
공급 세대수	13	39	4	18	16	14	-	104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등)을 받으신 분(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제외)
- 입주자자속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함(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제1호, 제2호 제외)
 - (1)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 선정

2.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소계
공급 세대수	13	39	4	18	16	14	11	115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자속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을 적용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자속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소계
공급 세대수	13	39	4	18	16	14	-	104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우주택세대구성원**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를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의 수는 각각으로 산정)
 - * 임양의 경우 입주자까지 임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자까지 출산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함]
 - ② 청약자격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 아닌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2014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원)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734,603이하	5,224,645이하	5,560,026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이하	6,269,574이하	6,672,031이하

- * 2011년부터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6인 이상 가구도 5인 이상 월평균소득에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소득인증관련 증명서류는 아래 'V.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입주자 선정방법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임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1)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2)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

- * 자녀수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임양기관에서 임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
- *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수에 따라 자녀로 인정함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소계
공급 세대수	4	11	1	5	5	4	3	33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기준에 따라 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우주택 세대주
 - ②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③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 경쟁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5.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3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함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소계
공급 세대수	40	119	12	54	50	42	35	352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8조에 의한 대상자
 - ①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②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당해 혁신도시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단, 이전공공기관 제외)
 - * 상기사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에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
- 청약자격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 중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직원의 특별공급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 자
 -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으로 이전 또는 설치한 날(지방이전계획승인일, 부지계약일 또는 건축승인후 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예정지구 등에 이전 또는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한다)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근무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만 해당하며,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원소속 부서에 기준으로 특별공급대상 여부를 판단
 - ③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상기 제②항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종사자는 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지방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전하는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함을 확인하는 자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다만, 이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잔류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잔류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 대상 업무를 담당

하는 자는 포함

-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이전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관할 광역시장·도시·특별자치도시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서 특별공급
- ⑤ 상기 제②항에 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의 입주일(주택의 입주일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 보다 빠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날을 말한다)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

• 신청기간

- ① 인터넷 청약 기간은 2015.03.17.(화) 10:00~17:30, 2015.03.18.(수) 10:00~15:0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② 인터넷 청약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신청방법

- 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인터넷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을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 하시기 바람
- ②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우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인터넷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www.housing.or.kr)접속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스템(apt2.housing.or.kr)” 바로가기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에서 울산 드림 In시티 메일링의 톨 2차 아파트선택 ⇒ “청약신청” 선택 ⇒ “주택” 선택 ⇒ 유의사항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서약서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 신청자 공인인증 ⇒ 청약신청 완료

• 입주자의 선정방법 : 인터넷 청약접수 방식을 제공하며, 입주대상자 모집결과 신청기간 경쟁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가 전산추첨을 통하여 입주자 선정

• 유의사항

- ①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며, 신청자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주택특별공급대상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가 분리되어도 주택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
- ② 주택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9조의5)을 받은 경우,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함(단, 제19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계
일반 특별공급	13	39	4	18	16	14	-	104
다자녀 특별공급	13	39	4	18	16	14	11	115
신혼부부 특별공급	13	39	4	18	16	14	-	10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	11	1	5	5	4	3	33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40	119	12	54	50	42	35	352

■ 일반공급

1.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므로 기준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함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2.09.25)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주거전용면적 85㎡이하는 3년, 85㎡초과는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됨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2. 입주자 선정방법

- 총별·동별·항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 받음

3.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주거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주택규모 변경 후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19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초과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액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제4항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관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85㎡ 이하	25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가 점 제	40%	-
102㎡ 이하	400만 원	600만 원	300만 원	추 점 제	60%	100%
135㎡ 이하	7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모든 면적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 2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하단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채권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 [별표1])

가정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 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지속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총점 비고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가정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지속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증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지속 가입자와 그 배우자(이외의 다른 세대원도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지속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지속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지속 가입기간 적용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지속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지속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함.

2. 신청시 참고사항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등·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태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천방법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태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함(등·호수배정 추천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 청약신청시 본인이 작성한 인적사항으로 통보가 가능하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 주택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은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사용한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의 다자녀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함 •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점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p>※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청 및 계약을 취소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검색(판단)대상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신청자의 세대원 포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판단은 아래 공무로 산정(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공공기관(시장 또는 군수 등)이 인정하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IV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거주 구분	순위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신청일자	청약신청 장소/시간	
민 간 공 공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우선함)	1순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5㎡ 이하 : 가정·추첨제 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1순위자가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정제로 접수 	2015.03.1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인터넷 뱅킹 이용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인터넷 뱅킹 이용자 www.ap2you.com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시간 : 08:00 ~ 17:30
		2순위	전주택형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15.03.2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장소:인터넷 -국민은행 :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인터넷 뱅킹 이용자 :www.ap2you.com · 접수시간 : 08:00 ~ 17:30

- ※ 은행방문접수 : 2순위 인터넷접수 참가은행(기업, 외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09:00 ~ 16:00
-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해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람,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 취소,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 신청형태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당사 일정에 따라 모집함

■ 2순위 청약신청

장 소	대상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처리
인터넷 접수(www.ap2you.com) 및 은행방문 접수	전 주택형	100만원	- 청약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청약신청금을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동 은행별단 입금계좌로 납부하고 청약자 거래은행은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이후 출금계좌로 청약신청금 반환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구분	내 용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5.03.26(목))이후 (평일 09: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환불장소	방문접수	· 청약접수한 참가은행 본·지점(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단, 지정계좌(청약신청한 시중은행 출금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환불됨
	인터넷접수	· 청약자 거래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동은행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청약금을 출금 계좌로 환불
구비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제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이용대상	-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청약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하신 분 - 2순위 : 거래은행 인터넷 청약 가입자 중 청약계좌에 2순위 청약금(100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1회 이체 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V 신청방법

- 아래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도 접수 불가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출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청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청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청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청자격을 소명해야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주민등록등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발급시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특별공급 (본인)신청시 제출서류

구비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약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포함(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청일에 신청장소에 비치
	청약통장 관계서류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아파트 투유(www.ap2you.com)에서 발급가능)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제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사용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일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만 인정함(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 특별공급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자녀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배정기준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출생관련 기본증명서	• 자녀의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임신진단서	• 임신의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에 한함)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증은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별로 제출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 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직계비속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에만 해당)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증명서(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재직 증명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허가증 • 서약서 (별첨 서식) •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 주택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지방이전공공기관종사자 특별공급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며, 상기 구비서류는 분양계약 체결시 제출 바람

<표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출서류**

※ 해당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

서류구분	해당자격	소득관련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인증 및 소득증빙 서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등 소득인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등기소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당사소정양식)	접수장소 비치		

■ **제3차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신청시 주요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 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V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 및 장소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예비당첨자 동호추천 및 계약체결
·일시 : 2015. 03. 26(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셔야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일시 : 2015. 03. 31(화) ~ 2015. 04. 02(목)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주택형별로 일반공급세대수의 20%의 범위 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동호추천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단, 동호수 배정에 참가할 예비입주자의 동의를 구한 경우 동호수배정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예비당첨자는 동호추천 및 계약체결 안내를 위하여 당첨자발표 후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사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당사 홈페이지(www.ulsan-eileen.co.kr)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견본주택에서 당첨자 확인

2.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천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여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40% 가정제, 60%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인터넷ARS 이용기간		2015. 03. 26. ~ 2015. 04. 04. (10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당첨사실조회
전화(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에 따라 청약자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번호 : 9-1-3-1 주민등록번호 입력)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주민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 03. 26. (목) 08:0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당사 홈페이지		www.ulsan-eileen.co.kr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됨

■ 계약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계약금 입금확인증	계약당일 아래의 공금금액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계약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당첨자의 인감도장	계약서상 서명(사인)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계약용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위 “계약시 구비서류” 에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구비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위임용), 당첨자의 인감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대리신청자의 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식은 신청장소에 비치]

■ 공금금액 납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해당동	예금주
공금금액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05-4108-08	201,203,205,207,209,211동	㈜아이에스건설
	국민은행	205701-04-308685	202,204,206,208,210동	

5.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금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 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장치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차등규격 및 사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 확장하지 아니한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 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시 견본주택과 실별구조가 다르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며 일부 사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확장시의 형태 및 사양은 가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금액단위 : 원,VAT포함)

주택형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비고
금액	10,600,000	11,600,000	12,100,000	13,100,000	14,300,000	14,300,000	15,800,000	
납부방법	계약금(계약시)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중도금1회차(2016.02.1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중도금2회차(2017.02.1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잔금(입주시)	7,600,000	8,600,000	9,100,000	10,100,000	11,300,000	11,300,000	12,800,000

■ 발코니확장금액 납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해당동	예금주
공금금액 납부계좌	부산은행	113-2005-4111-05	201,203,205,207,209,211동	㈜아이에스건설
	국민은행	205701-04-308698	202,204,206,208,210동	

6.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분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문	각실 출입문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알루미늄 창호외창, 현관방화문
②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바닥마감재 : 거실, 주방: 온돌마루(걸레받이포함), 장판, 석재, 타일 / 현관: 타일, 석재 / 발코니: 타일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③벽, 천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벽지 및 천장지, 거실 아트월 및 판넬, 신발장 및 가구류, 주방벽타일, 몰딩, 드레스룸, 화장대, 방침장(불박이, 시스템장) 발코니선반, 발코니수전, 전동빨래건조대	벽 : 단열+석고보드,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우물천정, 실내환기용 디퓨저, 에어컨냉매배관(거실, 안방)
④욕실	공용욕실, 부부욕실	타일, 천정, 석재, 재료분리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조명, 위생기구(욕조, 샤워부스, 양변기(비대일체형양변기 포함), 세면기, 수전류 등) 액세서리류, 욕실장, 욕실폰, 비데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⑤주방	주방	싱크 상, 하부장(상판및액세서리포함), 아일랜드장(상판및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TV, 주방수전, 싱크볼, 주방가전(가스쿡탑, 가스오븐, 렌지후드, 절수패달, 쌀냉장고) 일체	설비배관, 자동식소화기, 전기, 통신배관/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⑥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욕실등, 무선AP, 동체감지기, (전기, 전화, TV)콘센트, 써라운드잭	배관, 배선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71.8830	84.9044A	84.9275B	84.8412C	84.9044D	84.9275E	104.8541	비고
금액	21,448,806	25,090,202	25,173,077	25,330,866	25,090,202	25,173,077	30,759,426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함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선택만 가능함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입주자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재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 시공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정보통신,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7.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①~②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청약권한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① 청약자격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 세대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증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7조”에 준함

VII

유의사항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일** : 2017년 12월(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지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주민공동시설[지하1층 2개소(골프연습장, 다목적강당), 지하1층 6개소(휘트니스센터, 원기회복실, 주민카페, 연회장, 동호회실, 개인연습실)], 근린생활시설(1개소), 경로당(1개소), 보육시설(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어린이 놀이터(2개소), 외부 주민운동시설(2개소) 등

■ 지구 및 단지 여건

-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은 울산광역시도시(제2012-230호, 2012.10.25)로 승인된 “호계·매곡지구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울산광역시특구도시(제2013-32호, 2013.02.28)로 승인된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발계획도면이 변경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및 오도별리로 등 광역교통망은 지방자치단체,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지구단위계획변경,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시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도시개발실시계획 변경, 주변 여건 변화, 인허가 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도로선형, 도로폭, 도로계획,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변 공원 및 녹지는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되며, 세부조성계획은 향후 변경 가능함.
-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이 진행중이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구외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 등으로 진·출입로 및 인접도로의 포장형식과 기타 부지조성공사(가로등, 신호등, 방음벽등)가 당초 설계와 상이할 수 있음.
-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남측으로 울산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정결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면적 확정에 따른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아파트 완공 전 공동주택·소음유무 포함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사용경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함.
- 본 사업장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체비지와 한지로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한지처분) 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장 일부동(202, 203동)은 항공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 내에 포함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가 설치되며, 단지 옥상부분에 추가시설(안테나, 피뢰침, 물탱크 등)을 협의 없이 설치할 수 없음.
-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관련
 -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은 초등학교의 경우 호계·매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에 학교신설을 통해 배치가능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기존 북부학교군에 배치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고등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단,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앙통용자상사 결과에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학생배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중학교의 경우 기존 호계중학교(매곡·호계·농소·이화중)에 배치될 예정이며, 인근 개발사업 추이에 따라 학교 신설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북부 호계, 매곡, 중산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지역으로 학생 배치 여건이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상·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은 향후 인근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 추이 및 교육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근 오토밸리로 개통시 차량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결과 및 교육청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도 있음.
- 사업부지 내 SET-BACK하여 설치하는 차로 또는 보도 관련
 - 사업부지 일부[중로 1-75호선변 1단지 진출입구 가측차로(B=3M/L=52M)], 감소차로(B=3M/L=52M)]를 SET-BACK한 구간은 차로 또는 보도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부분은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대지부지에서 제외되며 분할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임.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으로 30m도로, 남측으로 16m도로, 동측으로 20m도로, 북측으로 34m도로와 근접함.
- 단지 동·서·남·북측 도로와 단지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동측 20M도로에 주출입구, 남측 16M도로에 부출입구가 위치해 있고, 보행자 전용 출입구는 단지 동측 20M도로에 1개소, 서측 교차로 외부계단 1개소 위치해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동측 20M도로에 주출입구, 남측 16M도로에 부출입구가 위치해 있고, 보행자 전용 출입구는 단지 동측 20M도로에 2개소 위치해 있음.
-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항공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외벽에 항공장애등이 설치·운영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눈부심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의 배치에 따라 일조·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협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추후 비상차, 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D.A, TOP LIGHT, 조정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행사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최소 2,300mm 이상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상으로 노출된 주차구획은 88대이며, 지하1층 주차장과 동일 레벨로 계획되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배치되어 있음.
- 단지 진입도로에 근접하여 2개소의 지하주차 진출입구가 설치되며, 근처 주동(201동-203동, 211동) 저층부 세대의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남동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202-203동과 근접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202동과 근접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및 옥상의 난간 및 돌출부에 의해 202동 저층세대에 조망·일조 및 프라이버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은 공동주택(208동-211동) 데크층에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을 수 있음.
- 주민운동시설과 인접한 209동, 210동은 그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주민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중앙광장,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집기는 시공, 설치 되지 않음.
- 단지 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다목적 체육관,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의 집기, 비품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 각 동의 주출입구는 동별 1-2개소이며, 아파트 진출입구에서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통해 진입함으로써 보행자 진입등선이 길어질 수 있음
- 입주시 단지 바닥강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사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 부과되며, 이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201동-205동은 전체 필로티, 206동-207동은 일부세대가 1층 필로티로 진입하고, 208동-211동은 1층 하부 데크층으로 진입하며 후면에 위치한 진입부가 1층 출 이르기까지 진입등선이 길어질 수 있고 또한 필로티 진입 및 데크층 진입 부분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206동, 207동 일부 1층에 세대가 있어 외부에서 계단실 진입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필로티 진입동과 차별이 있음.
- 201-211동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이 설치되어 저층부세대에 눈부심현상 및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1-207동 남서측에 준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동 일부 저층부는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한될 수 있음.(지구단위계획 상 최고 7층까지 건축가능)
- 201, 204, 206, 209, 210, 211동 정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2, 203, 205동 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4, 205동 측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창고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5, 207동 후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5, 208동 정면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창고 설치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망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1동 정면부의 보행자 주출입구 보행동선과 체육시설이 근접하고,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으로 인해 소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202동 정면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단지 부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저층부세대에 눈부심현상 및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2동 근린생활시설과 인접 배치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의 공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한 저층 일부 세대 소음 등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3동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단지 부출입구와 후면에 체육시설이 인접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세대에 눈부심현상 및 소음, 프라이버시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4동 후면에 어린이놀이터와 정면에 체육시설이 인접 배치되어 있어 야간조명등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5동, 208동 정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인접 배치되어 있고 배면에 중앙광원이 인접 배치되어 있어, 야간조명등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6동 정면 1층 하부에 지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배면에 어린이놀이터와 중앙광장이 인접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의 눈부심현상,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207동 정면에 정압기가 인접 설치되어 있고, 배면에 마동천이 위치해 있어 저층 일부세대 조양권,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08동 정면에 체육시설,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고, 배면에 마동천이 위치해 있어 소음, 보행자 안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208,209동 1층 하부에 데크층에 세대출입과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출입 보행동선으로 이용되어 소음, 보행자 안전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210동 정면 중앙광장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 세대의 눈부심현상, 소음 등 환경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11동 정면에 중앙공원과 어린이놀이터가 인접해 있고, 단지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저층부 세대의 눈부심현상, 소음 및 진동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11동 정면에 주출입구위치에 문주가 설치되며, 문주로 인해 저층세대에 조양·일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209동 정면, 210동 측,배면 지하층에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위치해 있고, 지상층에 D/A, 배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양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210동 정면, 211동 후면 지하층에 저수조 및 기계실이 위치해 있고, 지상층에 D/A, 배기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일부세대는 소음, 진동, 조양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동에서는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화장실의 배기는 공동배기, 전열교환기의 배기는 세대별 직배기이며 루버가 설치되고, 급기를 위하여 세대 상호에 별도의 루버가 설치됨.
- 일부 주택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살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급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분공사와 무관하며, 실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및 스포츠등은 전시용임.
- 일부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에 대상이 되지 않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의 협의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하고,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외부호청(유리포함)는 추후 풍양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천연대리석 및 화강석, 무늬목의 경우 자연적인 무늬로 인하여 흠집,결 무늬,이색 등이 있을 수 있음.
- 전기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은 사업승인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현관 전면의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본 사업부지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황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양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상가시설은 본 아파트 분양과 관계없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층별구성·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시설의 입주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단지조경 및 식재계획,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시 단지조경 시설물, 식재, 포장 및 미술작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감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사양 및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지차 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단, 대출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능하나, 관련정책·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구입자금보증서 발급기준에 따라 발급에 제한을 받을 경우 대출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금융기관을 통하여 개인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또한 당 아파트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추후 타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에 제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기로 함.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예정자가 사용감사일 이전(정확한 사전방문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임)에 입주자사전방문을 실시함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아파트의 구조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물딩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아파트 세대내부 가구(신발장, 주방장, 불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벽면, 바닥, 천정 등)이 없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마감자재는 자체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일 수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 초감도 및 모형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CG,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청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정당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

- 발코니 확장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선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비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타이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스공급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스정압실이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녹색건축 예비 인증**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등급) 건축물로 인증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제7조 제2항·제3항·제4항 적용)

1.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적용여부	비고
창호 단열 기준	적용	
벽체 단열 기준	적용	
열원 설비 기준	적용	
고단열 고기밀 강제창호 기준	적용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동스위치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택지비 및 택지비 감정평가기관**

[단위 : 원]

감정평가기관	평가금액
(주)가온감정평가법인	74,519,160,000
한국감정원	72,327,420,000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분양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단위 : 원]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제00000000-000-000000호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택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금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사고 :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택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택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택무자가 관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택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택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체제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 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원, VAT 포함)	사업장 소재지
건축 공사감리	㈜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699,400,000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09-9번지 도원빌딩
전기 공사감리	㈜대영기술단	673,079,86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0 시안프라자
소방,통신 공사감리	㈜중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117,700,000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65 신사힐 빌딩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주)아이에스건설	아이에스동서(주)	(주)아이에스건설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
법인등록번호	180111-0541482	110111-0208383	180111-0541482

VIII 기타사항

1.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124번길 1 (달동)
- 전 화 : (052)282-6000
- 운영시간 : 평일, 주말 10:00 ~ 18:00

2. 홈페이지 운영 안내 : www.ulsan-eileen.co.kr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임)

분양문의

견본주택 : 052) 282-6000